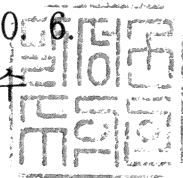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1866
----------	------

제출일자 : 2020. 10. 6.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4조)
- 나. 인구정책 시행계획, 인구정책 사업, 지원(안 제5조 ~ 제7조)
- 다. 인구교육 및 홍보(안 제8조)
- 라. 조사 및 연구, 포상(안 제9조 ~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20. 9. 7. ~ 9. 28.)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제6조 및 제8조 검토의견 반영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2. 일자리·교육·주택·교통·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홍보 등 군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인구정책 사업) ① 군수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출산·양육·주거 지원 사업
3.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4.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및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사업
5. 노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여가·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
6.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공모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 사무를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인구정책 지원) ① 군수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인구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수행 사무를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포상)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군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 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 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